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106호

다.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라.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시립마리공동체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 시설로,
-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용산구 소재(비공개 대상 시설)
- 시설규모 : (건물면적) 226.5m², 지상4층 (총 10호 중 3호)
- 시설용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주거·자립 지원
- 인력운영 : 4명(시설장 1, 상담원 3)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2026. 1. 1. ~ 2030. 12. 31.)
 - 위탁업무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 소요예산 : 277,089천원('25년도)
 - 인건비 212,189천원, 사업비 25,610천원, 운영비 등 39,29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5.6.26.)

다.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립마리공동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추진계획
(다문화담당관-6244, 2025.5.26.)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09.11.01.~’12.10.31.)	(사북)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12.11.01.~’15.10.31.)	(사)참여성 노동복지터	공개모집	
3차 위탁	5년 (‘15.11.01.~’20.10.31.)	(사)참여성 노동복지터	공개모집	
4차 위탁	5년 (‘21.1.~’25.12.)	(사)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	공개모집	수탁기관명 변경(기관동일)

라.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을 긴급히 보호하고, 의료·법률·통번역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특히 대사관, 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이주민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문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주여성 그룹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추진계획 (다문화담당관-6244, 2025.5.26.)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립마리공동체’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마리공동체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8개소(상담소 1, 보호시설 7)를 운영하고 있음.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은 여성가족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보조율은 50%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개요 >

- 202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예산규모 및 재원
 - : 총액 8,123백만원 (경상보조 8,006백만원, 자본보조 117백만원)
 - : 재원 : 양성평등기금
- 202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세부사업 및 예산액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 6,011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317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446백만원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 232백만원
 - 안전보강 : 117백만원
- 국비 보조율 : 서울 50%. 지방 50~70%

<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

구 분	시 설 명	소재지	입소 정원	종사자 정원	운영기관
합 계			105	49	
상담소(1)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동작구	-	6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쉼터(4)	서울이주여성쉼터	성북구	11	6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벗들의집	성북구	11	6	(사북)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행복이주여성쉼터	은평구	11	6	(재)서비스포피스
	마리이주여성쉼터	용산구	12	6	(사)참여성노동복지터
그룹홈(2)	마리공동체	용산구	10	4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랑의집	마포구	10	4	(사북)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활지원센터(1)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40	11	(사북)살레시오수녀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시설별 운영 개요 〉

구분	쉼 터(4)	자활지원센터(1)	그 룹 홈(2)
입소 대상	긴급한 일시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자활의지가 강하고 다음요건의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①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 ②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으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
보호 기간	2년 이내 (임시보호는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2년 이내 (기본 1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년 이내 (기본 1년,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사업 내용	·단기 보호 및 숙식의 제공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적 지원 ·수사 및 법원동행 등 법률지원 ·자립·자활 교육, 취업정보 제공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취창업 교육 및 기술훈련 ·한국어, 컴퓨터, 생활교육 등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지원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퇴소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 이번 동의안의 대상인 ‘마리공동체’는 보호시설 중 ‘그룹홈’으로 용산구 소재 건물에 운영 중이며, 입소 대상은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 중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입소 정원은 10명(동반자녀 포함)임

〈 마리공동체 운영 현황 〉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비공개 대상 시설)
→ LH 소유의 건물을 서울시가 임대하여 사용 중
- 인력운영 : 정원 4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자격증 보유자 3명)
- 주요기능 : 교육, 상담, 의료, 문화, 직업능력향상, 법률, 아동 지원 등
- 연도별예산 : 277백만원('25년), 227백만원('24년), 163백만원('23년) *국비:시비 5:5
- 운영주체 :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 마리공동체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입소 인원의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동반 아동 지원(학교문제 지원, 학습·놀이 지도 등), 심리·정서 지원(상담, 가족상담, 유관기관 연계 등), 자립지원(적성상담, 채용지원, 노무 교육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마리공동체 운영성과 〉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 정서	치료 회복	수사 법적	의료 지원	자립 지원	아동 지원	퇴소자 사후관리
2024년	2,291	322	242	77	91	563	705	291
2023년	3,031	351	228	94	123	360	1,571	304
2022년	1,960	463	145	90	112	89	1,059	2

○ 마리공동체 종합성과보고서²⁾를 살펴보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는 공동사무평가(사업인프라, 사업활동)와 개별사무평가(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환산점수 83.12점(원점수 74.81점)을 획득하였음

※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특성상 입소자의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만족도 조사 배점 10점이 제외되어 원점수 74.81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83.12점을 획득하게 되었음

〈 마리공동체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지표배점	득점
공동사무	1. 사업인프라	14.00	11.19
	2. 사업활동	12.00	8.84
개별사무	3. 사업성과	48.00	40.91
	4. 지도점검 이행노력	6.00	5.28
사용자만족도	5. 만족도 제고노력*	20.00	8.59
감점사례	6.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	-	-
합 계		100.00	74.81
↳ 환산점수			83.12

* 사용자만족도 관련

-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미 실시하여 '5-1.시민 만족도 조사(배점 10점)'는 0점 처리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추진 경과

- 마리공동체는 2009년 11월 최초 개소하였으며, 이후 민간위탁으로 시설이 운영되어 왔음.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는 2021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음

<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경과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09. 11. ~ ‘12. 10)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12. 11. ~ ‘15. 10)	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	공개모집	
3차 위탁	5년 (‘05. 11. ~ ‘20. 10)	"	공개모집	
4차 위탁	5년 (‘21. 1. ~ ‘25. 12)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공개모집	

- 2025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³⁾에서 이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적정’ 결과를 받았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025. 6.]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시립마리공동체)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	5년	적정	

- 이번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4)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당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마리공동체’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

- 이번 동의안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마리공동체’ 운영의 구체적인 사무는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 지원, 자활교육 지원,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임

< 마리공동체 위탁사무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 위탁사무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지귀를 위한 것으로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폭력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특히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8% 수준이며, 이 중 외

국민 여성(국적취득자, 자녀포함)은 55.8%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결혼도 증가하는 추세⁵⁾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상담·치료, 법률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⁶⁾

-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국비 보조사업(보조율 50%)인 점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폭력피해 이주여성이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서비스 중단이나 급격한 변화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수탁기관 선정 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경험과 전문성, 다문화·다언어 소통능력, 트라우마 상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함. 또한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라. 종합의견

- 이번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5)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 및 비율 : '23년: 449,014명(4.8%) (행정안전부 2023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24.10. 발표)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평가 결과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수한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폭력 트라우마를 겪은 특수한 상황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기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음